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

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

공보담당관 차범준

전화 051-780-4302

보 도 자 료

2024. 5. 24.(금)

중견 건설업체 법인자금 횡령, 불법로비 등 비리 수사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
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(부장검사 나희석)는 부산 소재 중견 건설업체 [㈜甲]의 비리사건을 직접 수사하여 **총 28명을 기소(6명 구속)**하였음
- **[회사 자금 유용 및 탈세]** 하도급업체에 부풀린 대금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거나 계열사 자금을 대표 개인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**약 170억원을 유용**하고, **그 과정에서 약 13억원 상당의 탈세**까지 감행한 **창업주 일가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(Moral Hazard)**를 확인한 사안임
- **[은행원들에 대한 조직적 금품 제공 및 부당한 대출조건 변경]** 3년간 **약 8,687만원 상당의 상품권·선물 제공, 골프·유흥 접대** 등을 통해 **주거래 지역은행의 유관 부서원들을 조직적으로 관리**하고, 실제 그 중 2명의 담당자가 **대출조건을 ㈜甲에게만 유리하게 변경**해주어 지역은행에 **약 70억원 상당의 손해 위험까지 초래**한 사실도 확인함
- **[지자체 공무원의 뇌물 범행]** ㈜甲의 사업과 직접 **관련된 지자체 부서 공무원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**하는 방식으로 **담당 공무원들을 계획적으로 관리**해온 사실도 규명함
- **[재개발조합 임직원에 대한 특혜성 이익 제공]** 재개발조합 임직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하여 매수하는 등 **지역 건설사와 재개발조합이 유착**되어 **조합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공적 지위를 私益 추구에 전용하는 전형적인 행태의 부패범죄**를 확인함
- **[수사기관·세무당국 공무원에 대한 로비 청탁]** 사업수행 등에서 이익을 관철할 목적으로 **전문 브로커들에게 억대 금품을 제공**하면서 **수사,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부탁하는 등 국가 기능을 사익 추구의 기회로 활용**키 위한 시도를 적발하기도 하였음

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1 피고인 (상세 피고인 정보는 별지1 참조)

순번	피고인	구 분
1	A○○, C○○ 외 2명 ※ A○○ 구속 기소	회사 자금 유용 및 탈세
2	A○○ 외 9명	지역은행 직원들의 금품 등 수수 및 부당한 대출조건 변경
3	W○○ 외 5명	유관 지자체 공무원들 관련 뇌물 범행
4	M○○, N○○ 외 3명 ※ M○○, N○○ 각 구속 기소	재개발조합 임직원에 대한 특혜 분양
5	P○○, Q○○, R○○ 외 4명 ※ P○○, Q○○, R○○ 각 구속 기소	수사기관, 세무당국 공무원에 대한 로비 청탁

2 주요 공소사실 요지 (상세 공소사실은 별지2 참조)

회사 자금 유용 및 탈세 관련 범행

1. 피고인 A○○, B○○, D○○

- ① (A○○ · B○○ · D○○) 하도급 업체에 부풀린 공사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'14. 8. ~ '20. 10. 약 82억원의 비자금 조성, ② (B○○ · D○○) '21. 6. ~ '22. 1. 같은 방법으로 약 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**[특경법위반(횡령)]**

2. 피고인 A○○

- '14. 8. ~ '20. 10. 위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①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, ② '16년 ~ '19년 ㈜甲의 법인세 합계 약 13억원을 포탈 **[특가법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, 특가법위반(조세), 조세범처벌법위반]**

3. 피고인 A○○, B○○

- 공모하여, ① '14. 4. ~ '23. 11.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 약 6,000만원 사용, ② '18. 11. ~ '19. 9. 개인 아파트 구입 등을 위해 乙㈜ 자금 약 42억원을 A○○ 명의 계좌로 이체, ③ '16. 1. ~ '20. 7. 급여를 가장하여 C○○에게 약 40억원을 지급 **[업무상횡령, 특경법위반(횡령)]**

4. 피고인 B○○, C○○

- ’21. 4.경 ㈜甲 자금으로 C○○이 대표인 ㈜丁의 보수 공사 대금 8,600만원을 대납하고, ’22. 11.경 乙㈜ 자금으로 합리적 채권회수 조치 없이 C○○이 대표인 丙㈜에 50억원을 사적으로 대여함 **[업무상배임, 특경법위반(배임)]**

은행 직원들의 금품 등 수수 및 부당한 대출조건 변경 관련 범행

1. 피고인 F○○, G○○

- ㄱ은행이 ㈜甲으로부터 PF대출의 담보로 제공받은 신탁계좌에서 ㈜甲 계열사가 후순위임에도 70억원을 먼저 인출할 수 있도록 대출 조건을 변경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 발생 위험을 ㄱ은행에 가함 **[특경법위반(배임)]**

2. 피고인 F○○, G○○, H○○, I○○, J○○, K○○, L○○

- ’20. ~ ’23. ㈜甲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합계 약 6,078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받음 **[특경법위반(수재등)]**

유관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 관련 범행

1. 피고인 W○○, X○○, Y○○

- W○○는 ’20. 9. ~ ’23. 9. 총 7회 합계 3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, X○○은 ’21. 2. ~ ’22. 9. 총 3회 합계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, Y○○은 ’22. 9. ~ ’23. 1. 총 2회 합계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각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**[뇌물수수]**

2. 피고인 Z○○

- ’22. 12.경 양산시청 국장에게 ‘㈜甲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사업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’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하려는 의사를 2회에 걸쳐 표시 **[뇌물공여의사표시]**

재개발조합 임직원에 대한 특혜성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범행

1. 피고인 M○○

- ’19. 8.경 ㈜甲으로부터 허위 급여 명목으로 7,320만원을 수수하고, ’22. 7.경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보류지 아파트 1채를 정상 분양가보다 1억 1,370만원 낮은 가격에 자신의 딸에게 매도케 함 **[특가법위반(뇌물)]**
- ’22. 7.경 O○○과 공모하여, ㈜甲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O○○이 ㈜甲으로부터 보류지 아파트 1채를 정상 분양가보다 1억 1,370만원 낮은 가격에 매수케 함 **[배임수재]**

- ’19.5.경 약 2억 1,600만원 상당의 미술작품 설치 용역계약을 법령에 위반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임의 체결 **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**

2. 피고인 N○○

- ’22.6.경 ㈜甲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보류지 아파트 1채를 정상 분양가보다 1억 1,370만원 낮은 가격에 자신의 아들에게 매도케 함 **[특가법위반(뇌물)]**

3. 피고인 O○○

- ’22.7.경 M○○과 공모하여, ㈜甲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보류지 아파트 1채를 정상 분양가보다 1억 1,370만원 낮은 가격에 매수 **[배임수재]**

수사기관, 세무당국 공무원에 대한 로비 청탁 관련 범행

1. 피고인 P○○, Q○○, S○○

- **(P○○, Q○○, S○○)** ’23.2.~’24.1. 공모하여, A○○의 구속수사 등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乙㈜ 대표 C○○ 등으로부터 3억 1,500만원 수수 **[변호사법위반]**
- **(P○○, S○○)** ’24.2.경 공모하여 C○○에게 ‘수사기관에 청탁하여 ㄴ구역 조합 비리 사건에서 입건되지 않게 해주겠다’는 취지로 말하며 대가로 1억 3,500만원 수수 **[변호사법위반]**
- **(S○○)** ’24.2.경 A○○의 구속수사 등 청탁 명목으로 C○○으로부터 3억원을 자신과 무관한 법인 명의 차명 계좌로 수수 **[변호사법위반,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]**

2. 피고인 R○○

- ’22.6.경 B○○에게 ‘양산시청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아파트 인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게 하겠다’는 취지로 말하며 ’23.7.경까지 그 대가로 1억 8,000만원 수수 **[변호사법위반]**

3. 피고인 T○○, U○○, V○○

- 공모하여 ①’23.8.경 ㈜甲에 대한 조속한 세무조사 착수 등을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5,500만원 수수, ② 위 계약 체결과정에서 C○○으로 하여금 계약 상대방에 U○○는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기망 **[변호사법위반, 사기]**

2 수사 경과

- ’23. 8. A○○·B○○·C○○ 등 업무상횡령 사건 검찰 송치
- ’23. 9.~10. A○○ 명의 계좌 등 관련 계좌 거래내역 분석
- ’23. 10. 27. ㈜甲 및 계열사, A○○·B○○ 사무실 등 압수수색
- ’23. 12. 4. ㄱ은행 및 ㈜甲 등 압수수색

- ’23. 12. 14. 창업주 일가 관련 계좌추적
- ’24. 1. 25. 울산시청·양산시청 등 압수수색
- ’24. 1. 31. A○○ 구속기소
- ’24. 3. 26. P○○, Q○○, R○○ 사무실 등 압수수색
- ’24. 3. 27. ㄱ은행 전·현직 직원 등 7명 불구속 기소
- ’24. 4. 12. P○○ 구속기소
- ’24. 4. 25. M○○, N○○ 구속기소
- ’24. 5. 3. Q○○ 구속기소
- ’24. 5. 17. R○○ 구속기소
- ’24. 5. 23. S○○, ㄱ○○, T○○, U○○, V○○, W○○, X○○, Y○○ 등 각 불구속 기소

3 수사 의의

● 적극적인 직접수사로 기업 범죄 전모를 규명

- 父子간 경영권 다툼 중으로 **피고인들이 범행 부인함에도 횡령의 고의 및 자금 용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경 송치사건에서,**
- **검찰**은 **압수수색 및 계좌추적**을 통해 **부외자금의 사적 유용 과정을 복원**하는 과정에서, 피고인들의 횡령 추가 범행을 규명한 것은 물론, **탈세범행, 유용자금 등의 대형 지역은행 임직원 및 유관 지자체 공무원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 등을 추가로 포착**하여 **해당 기업 전반에 관한 직접수사에 착수**한 결과, **각종 부패 기업범죄의 진상을 규명**하게 되었음

● 창업주 일가가 ‘쌈짓돈’처럼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방만한 경영 행태 엄단

- 창업주 일가는 ① 소위 **‘갑을관계’에 있는 하도급업체들을 이용**하여 **약 87억원의 비자금을 조성**, ② **계열사 자금 약 42억원**을 **창업주 아들의 아파트 구입 등 자금 마련**을 위해 개인 계좌로 이체, ③ 근무도 하지 않는 **창업주의 아들에게 급여를 빙자**하여 **약 40억원을 지급**, ④ **창업주 아들**이 대표인 **법인에 계열사 자금 약 50억원**을 실질 **담보 없이 대여**하는 등의 행태를 자행하였는바, 사주(社主), 경영자로서 회사 자금을 **개인 ‘쌈짓돈’처럼 마음대로 유용**하며 **회사 재산 전반을 사유화**한 **범행 전모**를 면밀한 직접수사를 통해 **규명함**

● **국가기관의 기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악용하고자 한 행태 엄단**

– 경영권 다툼에서 자신들의 반대 세력에 대한 **수사기관의 구속수사 및 세무당국의 세무조사**, **지자체의 인허가 취득** 등을 **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할 목적**으로 **수억원대의 금품을 '브로커'들에게 지급**하고 그 '브로커'들은 학연·근무연을 이용하여 실제 로비활동을 한 정황까지 확인하여, 사익 추구의 목적에서 **국가기관의 공적 기능**에 **부당한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에 경종**을 울리고 **엄단함**

● **지역 토착형 부패범죄의 전형을 규명하여 엄단**

– **지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중견 기업**이 **대형 지역은행**, **지역 내 재개발조합 등과 긴밀히 유착**되어 **지역사회에서 공공적 지위를 가진 은행 직원·재개발조합 임직원** 등이 **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금품·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** 전형적인 **지역 토착형 부패범죄를 규명**하여 **엄단**함

4 향후 계획

● 향후에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역사회에 현존하는 다양한 부패범죄들에 대하여 철저한 직접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예정

별지1

피고인 주요 정보

순번	피고인(나이)	직업・직책	죄명
1	A○○(55세)	㈜甲 現 대표	특경법위반(횡령), 특가법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 특가법위반(조세),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, 특경법위반(증재등) 뇌물공여
2	B○○(88세) ※'24. 3. 30. 사망, '24. 4. 17. 공소기각 결정	㈜甲 前 대표	특경법위반(횡령), 특경법위반(증재등) 업무상횡령, 업무상배임
3	C○○(51세)	㈜甲 前 대표	업무상배임, 특경법위반(배임)
4	D○○(60세)	㈜甲 前 전무	특경법위반(횡령)
5	E○○(40세)	㈜甲 부장	특경법위반(증재등), 뇌물공여
6	F○○(51세)	ㄱ은행 前 투자금융부장	특경법위반(배임) 특경법위반(수재등)
7	G○○(47세)	ㄱ은행 前 IB심사부장	
8	H○○(54세)	ㄱ은행 前 투자금융부장	특경법위반(수재등)
9	I○○(53세)	ㄱ은행 前 영업부장	
10	J○○(47세)	ㄱ은행 前 IB심사부장	
11	K○○(57세)	ㄱ은행 前 IB심사부장	
12	L○○(58세)	ㄱ은행 前 영업부장	
13	M○○(83세)	ㄴ구역 前 조합장	특가법위반(뇌물), 배임수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14	N○○(76세)	ㄴ구역 前 조합이사	특가법위반(뇌물)
15	O○○(48세)	ㄴ구역 前 조합사무장	배임수재
16	P○○(64세)	㈜庚산업 대표	변호사법위반
17	Q○○(69세)	前 경찰공무원	
18	R○○(60세)	前 양산시청 공무원	
19	S○○(57세)	㈜甲 前 상무	변호사법위반,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업무상배임
20	ㄱ○○(59세)	세무사	업무상배임
21	T○○(50세)	변호사	변호사법위반, 사기
22	U○○(48세)	세무사	
23	V○○(49세)	세무사	
24	W○○(50세)	울산시청 주무관	뇌물수수
25	X○○(51세)	울산시청 사무관	
26	Y○○(55세)	양산시청 사무관	
27	Z○○(53세)	건축사사무소 소장	뇌물공여의사표시
28	㈜甲	법인	조세범처벌법위반

별지2

주요 범죄사실 요지

※음영 표시는 구속 피고인

구 분		범죄사실 요지
회사 자금 유용 및 탈세	**A○○** [㈜甲 現 대표]	•하도급 업체에 부풀린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, '14. 8.경부터 '20. 10.경까지 82억원의 공사대금을 허위로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비자금 조성 **[특경법위반(횡령)]** •'14. 8.경부터 '20. 10.경까지 8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**[특가법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]** •'14. 8.경부터 '20. 10.경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액 상당을 법인세 신고 시 매출원가에 포함시켜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2016년, 2017년, 2018년, 2019년 사업연도 ㈜甲의 법인세 합계 약 13억 6,500만원을 포탈 **[특가법위반(조세), 조세범처벌법위반]** •'14. 4.경부터 '23. 11.경까지 ㈜甲 등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약 6,000만 원 사용하고, '18. 11.경부터 '19. 9.경까지 A○○의 아파트 구입 등을 위해 乙㈜의 자금 약 42.8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A○○ 개인 계좌에 이체하고, 약 40억원을 C○○에게 허위 급여 명목으로 지급 **[업무상횡령, 특경법위반(횡령)]**
	B○○ [㈜甲 前 대표]	•하도급 업체에 부풀린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, '14. 8.경부터 '20. 10.경까지 82억원의 공사대금을 허위로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비자금 조성 **[특경법위반(횡령)]** •'21. 6.경부터 '22. 6.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.3억원 상당의 비자금 조성 **[특경법위반(횡령)]** •'14. 4.경부터 '23. 11.경까지 ㈜甲 등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약 6,000만원 사용하고, '18. 11.경부터 '19. 9.경까지 A○○의 아파트 구입 등을 위해 乙㈜의 자금 약 42.8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A○○ 개인 계좌에 이체 **[업무상횡령, 특경법위반(횡령)]** •'21. 4.경 ㈜甲의 자금으로 차남 C○○이 대표로 있는 ㈜丁의 보수 공사 대금 8,600만원을 대납하고, '22. 11.경 乙㈜의 자금으로 합리적 채권회수 조치 없이 C○○이 대표로 있는 丙㈜에 50억원을 사적 대여 **[업무상배임, 특경법위반(배임)]**
	C○○ [㈜甲 前 대표]	•'21. 4.경 ㈜甲의 자금으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㈜丁의 보수 공사 대금 8,600만 원을 대납하고, '22. 11.경 乙㈜의 자금으로 합리적 채권회수 조치 없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丙㈜에 50억원을 사적 대여 **[업무상배임, 특경법위반(배임)]**
	D○○ [㈜甲 전무]	•'21. 6.경부터 '22. 6.경까지 하도급 업체에 부풀린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약 5.3억원 상당의 비자금 조성 **[특경법위반(횡령)]**
	㈜甲	•피고인의 대표이사 A○○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**[조세범처벌법위반]**
ㄱ은행 직원들의 금품 등 수수 및 부당한 대출조건 변경	**B○○** [㈜甲 前 대표]	•'20. ~ '23.경 E○○와 공모하여 ㈜甲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ㄱ은행 직원 10명에게 합계 약 6,868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, 선물, 향응을 제공 **[특경법위반(증재등)]**
	A○○ [㈜甲 現 대표]	•'20. ~ '23.경 E○○와 공모하여 ㈜甲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ㄱ은행 직원 8명에게 합계 약 1,818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교부 **[특경법위반(증재등)]**

	E○○ [㈜甲 부장]	•'20. ~ '23.경 A○○, B○○과 공모하여 ㈜甲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ㄱ은행 직원 11명에게 합계 약 8,687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 **[특경법위반(증재등)]**
	F○○ (ㄱ은행 前 투자금융 부장)	•ㄱ은행이 ㈜甲으로부터 PF대출의 담보로 제공받은 신탁계좌에서 ㈜甲 계열사가 후순위임에도 70억원을 먼저 인출할 수 있도록 대출 조건을 변경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발생 위험을 ㄱ은행에 가함 **[특경법위반(배임)]** •'20. ~ '23.경 ㈜甲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합계 약 412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받음 **[특경법위반(수재등)]**
	G○○ (ㄱ은행 前 IB심사부장	•ㄱ은행이 ㈜甲으로부터 PF대출의 담보로 제공받은 신탁계좌에서 ㈜甲 계열사가 후순위임에도 70억원을 먼저 인출할 수 있도록 대출 조건을 변경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발생 위험을 ㄱ은행에 가함 **[특경법위반(배임)]** •'20. ~ '23.경 ㈜甲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합계 약 1,467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받음 **[특경법위반(수재등)]**
	H○○ (ㄱ은행 前 투자금융 부장)	•'20. ~ '23.경 ㈜甲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합계 약 1,244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받음 **[특경법위반(수재등)]**
	I○○ (ㄱ은행 前 영업부장)	•'20. ~ '23.경 ㈜甲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합계 약 98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받음 **[특경법위반(수재등)]**
	J○○ (ㄱ은행 前 IB심사부장)	•'20. ~ '23.경 ㈜甲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합계 약 823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, 선물, 향응을 제공받아 **[특경법위반(수재등)]**
	K○○ (ㄱ은행 前 IB심사부장)	•'20. ~ '23.경 ㈜甲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합계 약 454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받음 **[특경법위반(수재등)]**
	L○○ (ㄱ은행 前 영업부장)	•'20. ~ '23.경 ㈜甲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합계 약 454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받음 **[특경법위반(수재등)]**
재개발조합 임직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	**A○○** [㈜甲 現 대표]	•'19. 8.경 조합장의 직무 관련하여 M○○에게 허위 급여 명목으로 7,320만원을 공여 **[뇌물공여]**
	M○○ (ㄴ구역 前조합장)	•'19. 8.경 시공사 ㈜甲으로부터 허위 급여 명목으로 7,320만원을 수수하고, '22. 7.경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보류지 아파트 1채를 정상 분양가보다 1억 1,370만원 낮은 가격에 자신의 딸에게 매도케 함 **[특가법위반(뇌물)]** •'22. 7.경 O○○과 공모하여, ㈜甲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O○○이 ㈜甲으로부터 보류지 아파트 1채를 정상 분양가보다 1억 1,370만원 낮은 가격에 매수케 함 **[배임수재]** •'19. 5.경 약 2억 1,600만원 상당의 미술작품 설치 용역계약을 법령에 위반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임의 체결 **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**
	N○○ (ㄴ구역 前조합이사)	•'22. 6.경 ㈜甲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보류지 아파트 1채를 정상 분양가보다 1억 1,370만원 낮은 가격에 자신의 아들에게 매도케 함 **[특가법위반(뇌물)]**
	O○○ (ㄴ구역 前조합사무장)	•'22. 7.경 M○○과 공모하여, ㈜甲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보류지 아파트 1채를 정상 분양가보다 1억 1,370만원 낮은 가격에 매수 **[배임수재]**

수사기관, 세무당국 공무원에 대한 로비 청탁	**P○○** [㈜庚산업 대표]	•`23. 2. ~ `24. 1. Q○○, S○○과 공모하여, ㈜甲 대표 A○○에 대한 구속수사 등을 수사기관 등에 청탁하는 명목으로 乙㈜ 대표 B○○·C○○으로부터 3억 1,500만원을 수수 **[변호사법위반]** •'24. 2.경 S○○과 공모하여 C○○에게 '수사기관에 청탁하여 ㄴ구역 조합 비리사건에서 입건되지 않게 해주고, 별건 횡령 피의사건 등에 대한 진행 상황 등을 알아봐 주겠다'는 취지로 말하고, 그 대가로 1억 3,500만원을 수수 **[변호사법위반]**
	Q○○ (前 경찰)	•`23. 2. ~ `24. 1. P○○, S○○과 공모하여, ㈜甲 대표 A○○에 대한 구속수사 등을 수사기관 등에 청탁하는 명목으로 乙㈜ 대표 B○○·C○○으로부터 3억 1,500만원을 수수 **[변호사법위반]**
	R○○ (前 공무원)	•'22. 6.경 ㈜甲 회장 B○○에게 '양산시청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양산 아파트 인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'는 취지로 말하고, 그때부터 '23. 7.경까지 알선 대가로 1억 8,000만원을 수수 **[변호사법위반]**
	S○○ [㈜甲 前 상무]	• ① `23. 2. ~ `24. 1. P○○, Q○○과 공모하여, ㈜甲 대표 A○○에 대한 구속수사 등을 수사기관 등에 청탁하는 명목으로 乙㈜ 대표 B○○·C○○으로부터 3억 1,500만원을 수수 **[변호사법위반]**, ②'24. 2.경 P○○와 공모하여 C○○에게 '수사기관에 청탁하여 ㄴ구역 조합 비리사건에서 입건되지 않게 해주고, 별건 횡령 피의사건 등에 대한 진행 상황 등을 알아봐 주겠다'는 취지로 말하고, 그 대가로 1억 3,500만원을 수수 **[변호사법위반]**, ③ `24. 2.경 A○○에 대한 구속수사 등을 수사기관 등에 청탁하는 명목으로 C○○으로부터 3억원을 ㈜戊 계좌로 용역계약을 가장하여 수수 **[변호사법위반,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]** • ㄷ○○과 공모하여 `21. 5.경 ㈜甲로 하여금 ㈜己과 허위 용역계약을 4억 2,900만원에 체결하여 ㈜己에 동액 상당을 지급하게 함 **[업무상배임]** **※ㄷ○○ 역시 동일한 업무상배임 공모 혐의로 같은 날 기소**
	T○○ (변호사) **U○○** (세무사)	• 공모하여 `23. 8.경 C○○으로부터 A○○이 운영하는 ㈜甲에 대한 조속한 세무조사 착수 및 B○○ 등에 대한 형사고발 차단 등을 부산지방국세청 담당 세무공무원 등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5,500만원을 수수 **[변호사법위반]**
	V○○ (세무사)	• 위 계약 체결과정에서 C○○으로 하여금 계약상대방에 U○○는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위 5,500만원을 편취 **[사기]**
유관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	**A○○** [㈜甲 現 대표]	• E○○와 공모하여, ㈜甲의 울산 온양읍·매곡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등에 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, `20. 9.경, `23. 9.경 W○○에게 총 2회 합계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공여 **[뇌물공여]**
	E○○ [㈜甲 부장]	• A○○, B○○과 공모하여, ㈜甲의 울산 온양읍·매곡동, 문수로 및 양산 평산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등에 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, `20. 9 ~ `23. 9. W○○, X○○, Y○○에게 합계 7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공여 **[뇌물공여]**
	W○○ (울산시 주무관)	• ㈜甲의 울산 온양읍 및 매곡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등에 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, `20. 9. ~ `23. 9. ㈜甲 대표 A○○, B○○으로부터 총 7회 합계 3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 **[뇌물수수]**
	X○○ (울산시 사무관)	• ㈜甲의 울산 문수로 공동주택 신축사업 등에 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, `21. 2. ~ `22. 9. ㈜甲 대표 B○○으로부터 총 3회 합계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 **[뇌물수수]**
	Y○○ (양산시 사무관)	• ㈜甲의 양산 평산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등에 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, `22. 9. ~ `23. 1. ㈜甲 대표 B○○으로부터 총 2회 합계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 **[뇌물수수]**
	Z○○ (건축사무소장)	• '22. 12. 28. 및 '22. 12. 29. 양산시청 국장에게 '㈜甲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사업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'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거절하여 돈을 건네주지 못함 **[뇌물공여의사표시]**